

#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원중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9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0일

발 의 자: 김원중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 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 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 
박환희, 신동원, 신복자,  
유정희, 윤기섭, 윤영희,  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 
임춘대, 최민규, 최진혁,  
홍국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미래유산은 최근 서울시 내 재개발 등으로 보존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의 미래유산 발굴과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- 또한,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5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, 서울의 미래유산 선정 취소 근거를 구체화하여 서울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 수립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제1항제4호).
- 나. 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로 규정함(안 제8조제1항).
- 다. 미래유산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5조).
- 라. 미래유산의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(안 제16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제8조제1항 중 “50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한다.

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(종전의 제15조)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한다.

3.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

4.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<u>제15조</u>(서울 미래유산의 취소)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제16조 ~ 제19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6조</u>(서울 미래유산의 취소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</u></p> <p>4. <u>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<u>제17조 ~ 제20조</u> (현행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)</p>